

高麗時代의 朝官內侍*

金 載 名**

I. 머리말	IV. 朝官內侍의 職銜과 職務
II. 武班職 및 權務職과 朝官內侍	V. 맺음말
III. 文班 品官職과 朝官內侍	

I. 머리말

中國의 宋이나 朝鮮의 경우와 달리 高麗의 內侍는 신분적으로나 신체적으로 欠缺이 있는 부류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文武官을 비롯하여 科擧 혹은 胥吏 出身이거나 최소한 나름대로의 특별한 才能을 가진 人材들로 구성되었다. 물론 그 중심을 이룬 것은 文武官 出身이었다. 이에 따라 宮中の 雜事보다는 奉命使臣이나 奏事의 官장, 각종 倉庫와 工事의 감독, 外國으로의 使行 등과 같은 활동이 그들의 보다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이점은 여러 先學의 研究에서 밝혀진 그대로이다.¹⁾

* 이 논문은 2001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

** 원광대 교수, 한국중세사

1) 高麗의 內侍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글들이 참고된다.

姜愛子, 「高麗時代의 內侍에 對하여」(梨花女大碩士學位論文, 1965).

朴孝信, 「高麗麗代의 內侍」, 『駿台史學』, 19(1966).

金昌洙, 「麗代 內侍의 身分」, 『東國史學』, 11(1969).

朴漢男, 「高麗內侍에 관한 研究」(成均館大碩士學位論文, 1982).

朴漢男, 「高麗內侍와 門閥貴族의 形成關係」, 『首善論集』, 8(1984).

그런데 정작 高麗가 이처럼 中國이나 朝鮮과는 다른 內侍制, 특히 朝廷의 文武官 出身을 대거 內侍로 등용하는 朝官內侍²⁾ 제도를 운영한 까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밝혀진 것이 없다. 물론 資料의 부족과 부정확함을 탓할 수도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이는 朝官內侍의 실체가 아직 제대로 구명되지 못했다는 데서 그 일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제도의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를 시행하게 된 정치적 의도나 시대적 배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朝官內侍의 실체에 대한 좀더 깊이 있는 탐구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文武의 品官職 및 權務職과 朝官內侍職의 관계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의 실체 구명에 접근해 보려고 한다. 특히 朝官內侍職의 골간을 이루는 文班 品官職의 官品上의 범주와 官署別 分布에 나타난 특징을 밝히는 데 논의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이들에게는 집단 전체의 공동 업무 뿐 아니라 자신의 직함에 따르는 고유한 직무가 따로 있었으며, 이 중 後者가 오히려 그들의 본질적 특성이나 정치적 성격을 잘 보여 준다는 점에 대해서도 살펴 볼 것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미리 언급해 두고 싶은 것은 資料의 限界를 충분히 극복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論旨을 전개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先學들의 叱正을 바란다.

II. 武班職 및 權務職과 朝官內侍

『高麗史』 列傳이나 墓誌銘 등에는 內侍大府少卿鄭國儉³⁾이라든가 內侍試秘書少

崔震植, 「高麗前期 內侍와 王權과의 關係」, 『東義史學』 4(1988).

金洛珍, 「牽龍軍과 武臣亂」, 『高麗武人政權研究』(서강대출판부 1995).

金載名, 「高麗 前·中期의 財政運營과 內侍」, 『歷史와 社會』, 24(국제문화학회, 2000).

金載名, 「高麗時代의 內侍」, 『歷史教育』, 81(2002).

周藤吉之, 「高麗初期의 內侍·茶房と明宗朝以後의 武臣政權との關係」, 『高麗朝官僚制の研究』(法政大出版局, 1980).

2) 內侍 가운데 ‘內侍大府少卿’의 경우와 같이 朝官의 직함을 띠고 派遣官 형식으로 闕內的 內侍院에서 근무하는 官員을 말한다. 이의 개념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金載名 앞의 논문(2002) 참조

監金闈⁴⁾의 예와 같이 ‘內侍 에 이어 官職 및 姓名이 차례로 병기된 內侍의 존재가 꽤 많이 보인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러한 官歷은 ‘屬內侍 爲大府少卿 이나⁵⁾ ‘召入內侍 授工部郎中⁶⁾, ‘授良醞令 屬內侍⁷⁾ 등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들 모두 각각 大府少卿·試秘書少監·工部郎中·良醞令 등의 벼슬을 띠고 파견관 형식으로 闕內的 內侍院에서 근무하는 이른바 朝官內侍인 것으로 파악된다.⁸⁾

이러한 朝官內侍職에는 文班職과 武班職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주류를 이룬 것은 前者였다. 통치를 위한 관료 조직이 文班 官職을 중심으로 짜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先學들이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武人執權을 계기로 武臣도 內侍에 진출할 수 있었으며,⁹⁾ 이와 함께 武班職도 朝官內侍職에 포함되었다. 실제로 武人執權期 이후로는 그러한 사례를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가령 忠肅王 때 大護軍을 지낸 鄭卜責이 內侍大將軍의 한 예¹⁰⁾라면, 武臣亂 직후 李義方과 함께 李高를 격살한 蔡元은 內侍將軍의 예¹¹⁾이며, 高宗 17년의 琴儀 墓誌銘에 그의 만사위로 나오는 尹惟孝는 內侍中郎將의 일례¹²⁾라 하겠다. 그런가 하면 元宗 初에 老母의 侍病을 위해 벼슬을 버린 內侍郎將 崔允通¹³⁾을 비롯하여 明宗 17년 內侍別將을 역임한 崔允諧,¹⁴⁾ 高宗 16년 內侍攝散員으로 있다가 요절한 崔日兄¹⁵⁾ 등의 사례도 보인다.

이들 사례 외에도 武班職을 띤 朝官內侍의 존재는 『高麗史』를 비롯한 여러 문

3) 『高麗史』卷 128, 列傳 41, 叛逆 2, 鄭仲夫 附 宋有仁, 128:13b(3:780).

4) 金龍善 編著, 『高麗墓誌銘集成』, 103 「崔允儀墓誌銘」, 199쪽.

5) 『高麗史』卷 100, 列傳 13, 鄭國儉, 100:29b(3:229).

6) 『高麗史』卷 99, 列傳 12, 庾應圭, 99:31b(3:208). 墓誌銘에는 ‘召入爲內侍 拜工部郎中 으로 표기되어 있다. 金龍善 編著, 앞의 책, 116 「庾應圭墓誌銘」, 227~228 쪽

7) 『高麗史』卷 122, 列傳 35, 方技, 李商老, 122:5a(3:658).

8) 金載名, 앞의 논문(2002).

9) 주 1)에 제시된 姜愛子, 朴漢男 周藤吉之의 논문

10) 金龍善 編著, 앞의 책, 217 「金恂墓誌銘」, 439~441쪽.

11) 『高麗史』卷 128, 列傳 41, 叛逆 2, 李義方, 128:16a(3:781).

12) 金龍善 編著, 앞의 책, 181 「琴儀墓誌銘」, 359~361쪽.

13) 『高麗史』卷 25, 世家 25, 元宗 1, 2年 正月 丁丑, 25:21a(1:512).

14) 金龍善 編著, 앞의 책, 132 「申甫純墓誌銘」, 261~263쪽.

15) 위의 책, 180 「崔日兄墓誌銘」, 357~358 쪽

현에서 許多하게 찾아진다. 따라서 이를 일일이 적시하지는 않고자 한다 다만 앞에서 소개한 內侍大護軍 鄭士責의 경우와 함께 忠烈王 때의 內侍將軍 李之氏¹⁶⁾ 및 近侍護軍 金倫¹⁷⁾의 사례만은 주목해 둘 필요가 있다. 武臣執權期가 끝난 후에도 武班職을 띠는 朝官內侍가 사라지지 않고 元 干涉期까지 줄곧 존속했음을 전해 주기 때문이다. 아울러 武班의 최고위직인 上將軍과 最下 品官인 校尉의 예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또한 관심을 끄는 사항인데, 前者는 後述하는 바와 같이 內侍職이 從3品職까지로 한정된 사실과 관계가 있으며, 後者の 경우는 자료의 未備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보면 결국 武班職의 경우 武臣執權期 이래 元 干涉期에 이르기까지 正3品の 上將軍을 제외한 모든 品官職이 朝官內侍職의 범주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文班의 品外職이기는 하지만 대략 9품직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았던 權務職¹⁸⁾ 또한 朝官內侍職의 중요한 대상이었다. 여기서 權務職을 띤 朝官內侍의 실례를 『高麗史』를 비롯한 여러 자료에서 적출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權務職을 띤 朝官內侍는 꽤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時期別로도 그렇고 官署別로도 그렇다. 睿宗 때부터 忠烈王 연간까지 두루 걸쳐 있을 뿐 아니라,¹⁹⁾ 權務職이 집중적으로 설치되었다고 하는 諸司都監各色 계열의 관청은 물론이고, 史館이나 翰林院·寶文閣 같은 文翰 官署에 부분적으로 설치된 權務職까지 그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위 <표 1>에 빠진 다른 대부분의 權務職 또한 資料의 不備로 그러할 뿐 실제로는 朝官內侍職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확인되는 것만 해도 그 定額이 100여명에 이르는 만큼²⁰⁾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權務職이 동시에 朝官內侍였다고는 할 수 없다. 이점 後述하는 文班 品官職의 경우와 결코 다르지 않다.

16) 『高麗史』卷 104, 列傳 17, 金周鼎, 104:45b(3:303).

17) 金龍善 編著, 앞의 책, 208 「崔瑞墓誌銘」, 423쪽.

18) 權務職에 대해서는 金光洙, 「高麗時代의 權務職」, 『韓國史研究』, 30(1980) 참조.

19) 睿宗 이전, 특히 權務職制가 일괄 정리된 때임에도 文宗代를 前後한 시기의 사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朝官內侍를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한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점에 대해서는 4장에서 後述한다.

20) 金光洙, 앞의 논문(1980).

<표 1> 權務職을 띤 朝官内侍

	官 職	人 名	時 期	典 據
諸 司 都 監 各 色	祭器都監判官	尹彥旼	仁宗 初	集成, p.141
	"	鄭知源	仁宗代	集成, p.103
	橋路都監○○	咸有一	毅宗代	列傳, p.206
	南面都監判官	柳光植	明宗 14	集成, p.337
	奉先庫判官	尹彥旼	仁宗 初	集成, p.141
	"	朴 犀	康宗 1	集成, p.310
	宮箭庫判官	安○○	高宗 5	集成, p.326
	都齋庫判官	崔 雲	忠烈王 22	集成, p.453
	八關寶判官	琴 儀	明宗 14	集成, p.359
	寫經院判官	崔 誠	睿宗 12	集成, p.42, 185
	"	崔光鈞	毅宗 14	集成, p.185
	句覆院判官	晉就明	明宗 16	集成, p.256
	"	白賁華	熙宗 初	集成, p.342
	材官(材場判官)	崔 晷	高宗代	集成, p.358
	都塩院錄事	梁元俊	仁宗 6	集成, p.171
	東大悲院錄事	梁文炯	毅宗 12	集成, p.172
	書籍店錄事	趙 簡	忠烈王 6	世家, p.593
	懿親宮錄事	梁元俊	仁宗 4	集成, p.171
	明福宮錄事	咸有一	毅宗 初	集成, p.250
	慶禧宮錄事	高伯挺	高宗 28	集成, pp.377~8
興信宮錄事	李彥冲	忠烈王 20	集成, p.500	
碩陵直	金 璉	高宗 末	列傳, p.274	
開城牧監	文○○	高宗 5	集成, p.326	
江陰牧監	金台鉉	忠烈王 初	集成, pp.476~8	
文 翰 官 署	直史館	鄭 沆	睿宗代	集成, p.61
	直翰林院	鄭 沆	睿宗代	集成, p.61
	"	安 珣	元宗 初	列傳, p.322
	寶文閣校勘	崔褻抗	仁宗 6	集成, p.92
	"	金忠孝	仁宗 23	三國史記 編纂者

* 世家·列傳：高麗史 上·下(亞細亞文化社, 1990)

集成：高麗墓誌銘集成(金龍善 編著, 翰林大出版部, 1993)

III. 文班 品官職과 朝官內侍

1. 官品上의 制限

武班職과 權務職이 朝官內侍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의 하나였으나, 앞서 언급한 바 그대로 이의 根幹을 이루는 것은 역시 文班의 品官職이었다. 직무상의 比重이 훨씬 컸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사례 또한 월등히 많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렇다고 모든 文班 品官職이 朝官內侍의 범주에 속했던 것은 아니다.

우선, 官品上으로는 9품에서 3품에 이르는 관직만이 그 대상이었다고 이해된다. 東堂監試의 放榜儀 절차를 규정한 『高麗史』 禮志의 다음 자료에 먼저 주목해보자.

A-㉠ 왕이 隱幕에 거동하면 內侍와 茶房의 參上·參外는 官服 차림으로 일시에 肅拜하고 갈라 서며, 牽龍·中禁·都知들도 肅拜하고 갈라 선다. 侍臣들도 入庭하여 左右로 갈라 서는데 侍臣이 앞 줄에, 內侍가 그 다음에, 牽龍과 都知는 맨 뒤에 선다. 內侍 參外員이 及第者 명단을 들고(執卷) 內侍의 文臣 3品 以下員이 차례차례 榜을 부르는대로(唱榜) 中禁이 밖으로 나가 호명하면 及第者가 入庭한다²¹⁾

放榜 의식에 함께 참여하지만 朝官內侍의 參上和 參外는 그 임무가 각기 달랐다. 參外官의 역할이 執卷이라면 參上官은 唱榜하는 일을 맡았다 그런데 唱榜 역할을 하는 參上官을 ‘文臣三品以下員’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內侍 參上의 경우 3品職까지로 한정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이를 放榜儀의 경우에만 국한된 사실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A-㉡ 공의 이름은 沖이고, 字는 湛若이며, 본관은 橫川이다 공은 어릴 때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문장에 능하였다. 스무 살 때 科擧 進士第에 及第하고, 宰相家의 자제로 일찍이 벼슬길에 올랐던 터라 內侍로 불러

21) 『高麗史』 卷 68, 志 22, 禮 10, 嘉禮 東堂監試放榜儀, 68:14b-5a(2:492-3).

들어갔는데, 처음 벼슬로부터 3품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內廷(內侍院)을 떠나지 않았으니, 그 기간이 근 30년이었다²²⁾

는 내용의 趙冲 誄書는 그것이 보다 일반적인 사실일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즉 30년 가까운 內侍 履歷을 강조하면서도 마지막으로 지낸 內侍職名 대신 ‘3품’이란 官品을 적시한 사실은 內侍와 3品職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함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며, 그리고 그 관계란 아마도 3品職이 朝官內侍의 上限線이라는 사실이 아닐까 한다.

이렇게 볼 때 일단 2품 이상의 品官, 곧 宰樞는 기본적으로 朝官內侍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수많은 朝官內侍의 사례 중에서 宰樞職을 띤 朝官內侍의 예가 전무하다는 것도 이같은 이해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宰樞 뿐 아니라 3品職 중에서도 正品, 즉 6部尙書나 中樞院의 承宣과 같은 正3品職을 띤 朝官內侍의 사례 또한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반면에 오랫동안 內侍를 지내다 仁宗 16년 承宣으로 발탁된 裴景誠의 관력을 ‘不離侍從之列’이라 하고 또 ‘高游星官 關步樞庭’이라고 평한 예²³⁾는 오히려 朝官內侍로 있다가도 承宣에 除授되면 內侍職에서 떠나야 했음을 보여 준다. 星官은 內侍의 별칭이며,²⁴⁾ 關步樞庭은 承宣으로 활동한 사실을 가리키는 바, 이처럼 內侍와 承宣으로서의 활동을 구분해 설명한 것은 곧 承宣에 임명되면서 그의 직무처가 內侍院에서 中樞院으로 옮겨졌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에 소개하는 柳公權의 사례에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즉,

A-㉠ 公의 이름은 公權이고, 字는 正平이며, 姓은 柳氏요, 본관은 始寧이다
..... 庚寅年에 今上(明宗)이 卽位하여 크게 쓰고자 생각하고 곧 公을 불러 內宦(內侍)으로 삼고서는 四門博士를 除授하여 直史館을 兼하도록 하였다. 마침내 軍器寺와 大府寺의 注簿를 역임하고 乙未年에는 閣門祇候에 임명되었다. 이로부터 해마다 除授되고 해마다 옮겨져서 殿中內給事·尙衣奉御·戶部員外郎·工部郎中·兵部郎中에 두루 拜任되

22) 『東國李相國集』 全集, 卷 36, 墓誌·誄書, 金紫光祿大夫…… 判禮部事趙公誄書, 36:14b(2:79).

23) 金龍善 編著, 앞의 책, 42 「裴景誠墓誌銘」, 86~87 쪽

24) 金載名, 앞의 논문(2002).

었다. 壬寅年에는 國學直講을 兼하였고, 이듬해에는 將作少監·太子司經이 加해졌으며, 다시 轉任하여 太子中允이 되면서 史館의 修撰官에도 充任되었다. 또 그 이듬해에는 軍器監·東宮侍講學士를 加하였으며, 丙午年에는 使臣을 받들어 北朝 翁에 갔는데 周旋하는 가운데 法에 꼭 맞고 禮에 여긋남이 없어 北人들이 公경하였다. 이에 王이 君命을 욕되게 하지 않았음을 가상히 여겨 吏部侍郎에 改授하였다가 곧이어 禮賓卿과 樞密院右副承宣에 除拜하였다.

는 官歷에 대해

公은 庚寅年에 임금을 만난 이래로 天院(內侍院)을 떠나지 아니한 채 높은 벼슬을 두루 거쳐 喉舌의 직책에 이르렀으니(公 自庚寅遭遇以來 不離天院 備歷高華 以至喉舌之任), 임금의 대우가 腹心和 같이 친밀하여 다른 신하들보다 월등하였다.²⁵⁾

고 설명한 것은 喉舌職인 右副承宣 이전의 四門博士로부터 禮賓卿까지가 朝官內侍職임을 함축적으로 전제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承宣職에만 국한되는 현상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같은 正3品職의 대표적 존재인 6部尙書를 비롯하여 殿中省·衛尉寺·大僕寺 등의 判書 직함을 띤 朝官內侍의 사례 또한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正3品職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이해함이 옳을 듯하다. 다시 말해 正3品職을 띤 朝官內侍의 사례는 아예 없었던 것이지 자료의 不備로 인해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武班職에서 上將軍을 띤 朝官內侍의 사례가 전무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실은 正3品職에 오르게 되면 內侍를 그만뒀어야 했던 이런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결국 朝官內侍의 官品상의 범주는 從9品에서 從3品까지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 이는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朝官內侍職을 역임한 인물들의 官歷을 통해 재삼 확인된다. 보다 확실한 사실 이해를 위해 앞서 소개한 柳公

25) 金龍善 編著, 앞의 책, 144 「柳公權墓誌銘」, 280-283쪽.

權 외에 몇몇 인물의 사례를 추가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30년 가까이 內侍를 지냈다는 趙冲의 경우부터 살펴 보자

A-㉔ 貞祐 元年(1213, 高宗 卽位 國子監大司成寶文閣學士知制誥로서 다시 翰林學士를 兼하도록 除拜되었는데, 대저 侍臣은 으레 星官에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은 기뻐하며 말하기를, “내가 벼슬을 지낸 일이 많으나 일찍이 文翰의 職任을 얻어 蛾眉班에 참여하지 못했더니 오늘의 除授는 실로 나의 뜻에 부합한다.” 하고는 이에 더욱 經史에 전력하고 문장에 힘썼으니, 무릇 高文과 大冊이 모두 공의 손에서 나왔다.²⁶⁾

A-㉔에 이어지는 위 기사의 내용으로 볼 때 趙冲이 內侍職을 그만 둔 것은 國子監大司成으로 翰林學士를 兼職하게 된 高宗 卽位年의 일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 이전의 官職은 일단 모두 朝官內侍職인 것으로 파악된다.²⁷⁾ 그런데 趙冲의 官歷을 보다 상세히 전하고 있는 墓誌銘을 보면 그는 2년 전에 이미 大司成에 除授되었다고 하는 바, 그렇다면 大司成 또한 內侍職이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墓誌銘에서 그의 朝官內侍 이력을 조사해 보면 閣門 祇候, 試尙食奉御, 戶部員外郎, 工部郎中, 太子文學, 太僕少卿, 禮部侍郎, 兵部侍郎, 吏部侍郎, 國子祭酒 및 大司成 등을 역임했던 것으로 확인된다.²⁸⁾

이어, 世家의 자제로서 평생의 대부분을 內侍로 일관한 尹彦旼의 경우를 살펴 보자. 墓誌銘²⁹⁾에 의하면 그는 仁宗 초에 祭器都監判官으로 內侍院에 入屬하여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친 뒤, 毅宗 8년 試太僕少卿으로 타계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26) 『東國李相國集』 全集, 卷 36, 墓誌·誄書, 金紫光祿大夫…… 判禮部事趙公誄書 36:14b(2:79). 原文에는 趙冲이 ‘貞祐 六年(1218, 高宗 5)에 國子監大司成寶文閣學士知制誥로서 다시 翰林學士를 兼하도록 除拜되었다고 기술하였으나, 그의 官歷을 보다 상세히 전하고 있는 墓誌銘(金龍善 編著, 앞의 책, 169 「趙冲墓誌銘」, 334~337쪽)과 대조해 볼 때 이것은 貞祐 元年(1213)의 일이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原文의 ‘六’은 刻字 과정에서 생긴 ‘元’의 誤刻이었다고 본다

27) ‘及第 직후 內侍에 入屬한 이래 3品에 이르기까지 근 30년 동안 內廷 內侍院을 떠난 적이 없다’는 A-㉔의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28) 金龍善 編著, 앞의 책, 169 「趙冲墓誌銘」, 334~335쪽.

29) 위의 책, 72 「尹彦旼墓誌銘」, 140~142쪽.

그의 이러한 이력에 대해 ‘歷事二代 涉入內宦 不遷天庭³⁰⁾이란 평을 덧붙이고 있다. 이렇게 二代를 섬기면서도 內侍院을 떠난 적이 없었다 하고, 墓誌銘의 標題가 ‘卒內侍檢校戶部尚書試太僕少卿尹公墓誌銘’으로 되어 있어 타계할 때의 試太僕少卿 또한 內侍職임이 분명한 점 등은 의미가 크다. 外職을 제외한 祭器都監判官 이래의 역임 官職, 즉 內庫副使, 試禮賓注簿, 權知閣門祇候, 試殿中內給事, 試閣門祇候, 試尙食奉御, 閣門副使, 試兵部郎中, 知閣門事, 試衛尉少卿, 試工部郎中, 試太僕少卿 등이 모두 朝官內侍職인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崔褻抗의 경우 또한

A-⊕ 乙丑年(仁宗 23) 12월 15일 病으로 관아에서 죽으니 享年 47 세라.....

公이 國學에 있을 때 觀相을 잘 보는 사람이 있어 말하기를, “鶴의 相이다. 마땅히 貴하게 될 것이다.”고 하였으나, 임금의 결을 떠나지 않는 데(不離君側) 그쳤을 뿐이니 그 어찌 맞추었다 하겠는가.³¹⁾

라고 하여 仁宗 6년 內侍省에 들어간 이래 타계할 때까지 그곳에 있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그 사이 역임한 大府注簿, 權知閣門祇候, 禮部員外郎, 兵部郎中, 試衛尉少卿, 秘書少監 등의 관직 모두 朝官內侍職인 것으로 이해된다. 마찬가지로 熙宗 2년에 入屬하여 高宗 11년 죽을 때까지 19년 동안 줄곧 內侍를 지낸 白賁華의 경우도 그 사이 역임한 官歷 모두 朝官內侍職이라 하겠는 바, 秘書校書郎을 비롯하여 衛尉注簿, 少府丞, 閣門祇候, 禮部員外郎 등의 관직이 그것이다.³²⁾

여기서 柳公權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소개한 5명의 인물이 오랫동안 內侍를 지내면서 역임한 관직, 즉 朝官內侍職을 官品別로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에 잘 드러나 있듯이 朝官內侍職의 官品은 매우 다양하였다. 물론 從5品職을 비롯하여 從8品 및 從9品職의 예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앞서 소개한 5인의 경우에 국한되는 사실일 뿐 이들 官品에 해당하는 朝官內侍職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라고 본다.

30) 原文은 ‘不踐天庭’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不遷天庭’의 착오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대해서는 金載名, 앞의 논문(2002), 주 43) 참조

31) 金龍善 編著, 앞의 책, 44 「崔褻抗墓誌銘」, 91~92 쪽

32) 위의 책, 173 「白賁華墓誌銘」, 341~342 쪽

<표 2>

	崔 褒 抗 (인 중 대)	尹 彦 旼 (인종~의종)	柳 公 權 (명 중 대)	趙 冲 (명종~고종)	白 賁 華 (희종~고종)
正3品					
從3品			禮賓卿	大司成	
正4品			吏部侍郎 軍器監	國子祭酒 吏部侍郎 兵部侍郎 禮部侍郎	
從4品	秘書少監 衛尉少卿	太僕少卿 衛尉少卿	將作少監	太僕少卿	
正5品	兵部郎中	工部郎中 兵部郎中	兵部郎中 工部郎中	工部郎中	
從5品					
正6品	禮部員外郎	閤門副使 尙食奉御	戶部員外郎 尙衣奉御	戶部員外郎 尙食奉御	禮部員外郎
從6品		殿中內給事	殿中內給事		少府丞
正7品	閤門祗候	閤門祗候	閤門祗候	閤門祗候	閤門祗候
從7品	大府注簿	禮賓注簿	大府注簿		衛尉注簿
正8品		內庫副使	軍器注簿 四門博士		
從8品					
正9品					秘書校書郎
從9品					

- * 試職과 權知職은 眞職으로 통합
- * 兼職과 東宮職은 제외

가령 從8品職의 경우 肅宗 初에 內侍都校令을 지낸 王字之³³⁾ 仁宗 때 內侍供驛署丞을 역임한 金永夫³⁴⁾ 高宗 말 內侍大樂署丞에 除授된 許珙³⁵⁾ 등의 사례가 있

33) 『高麗史』 卷 92, 列傳 5, 王儒 附 字之, 92:11a(3:72).
 34) 金龍善 編著, 앞의 책, 113 「金永夫墓誌銘」, 217~218쪽.

으며, 從9品職으로는 忠肅王 8년의 內侍成均學諭 李繼英³⁶⁾의 예가 확인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正9品職의 경우 또한 <표 2>의 秘書校書郎 외에도 그 예가 다수 보이는 바, 毅宗 6년의 內侍秘書省校書郎 金居實³⁷⁾과 明宗 5년의 內侍守宮丞 楊元貴³⁸⁾ 元宗 연간의 內侍都染署丞 閔宗儒³⁹⁾ 등이 그 좋은 실례이다. 다만, 寡聞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從5品職의 경우는 그 실례를 전혀 찾을 수 없다. 현재로서는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지만, 이는 아마도 자료상의 不備에서 기인하는 것일 뿐, 실제로 그러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2. 官署別 分布

朝官內侍職의 官署別 分布 또한 매우 다양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표 2>를 비롯하여 앞서 소개한 여러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만 해도 吏部, 兵部, 戶部, 禮部, 工部, 國子監, 秘書省, 閣門, 殿中省, 衛尉寺, 大僕寺, 禮賓省, 大府寺, 小府監, 將作監, 軍器監, 尙食局, 尙衣局, 內庫, 都校署, 供驛署, 大樂署, 守宮署, 都染署 등 무려 24 官署에 이르며, 이 밖에도 10여 官署의 사례가 추가로 확인된다. 여기서 이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을 보면 文宗代의 官制를 기준으로 거의 대부분의 官署가 朝官內侍職의 대상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주로 兼官制로 운영되던 三司나 大常府⁴⁰⁾를 제외하더라도 大廟署·諸陵署를 비롯한 10여 官署⁴¹⁾의 예를 찾을 수 없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資料의 不備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이들 모두 <표 3>에 제시된 여러 寺·監·署 官署와 그 위상이나 성격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특

35) 위의 책, 200 「許珙墓誌銘」, 403쪽.

36) 위의 책, 216 「尹瑋妻朴氏墓誌銘」, 438~439쪽.

37) 위의 책, 61 「閔瑛墓誌銘」, 122~123쪽.

38) 『高麗史』 卷 19, 世家 19, 明宗 1, 5年 5月 乙酉, 19:27a(1:396).

39) 金龍善 編著, 앞의 책, 220 「閔宗儒墓誌銘」, 447~448쪽.

40) 大常府의 官職은 모두 『高麗史』 百官志에 兼職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三司의 官職 또한 元干涉期 이전까지는 거의 모두 兼職이었다고 이해된다. 邊太燮, 「高麗의 三司」, 『歷史教育』, 17(1975).

41) 尙藥局, 尙舍局, 尙乘局, 京市署, 典廐署, 掌牲署, 司儀署, 典獄署, 大盈署 및 司天臺, 太史局, 太醫監 등의 官署가 그것이다.

별히 배제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만, 中樞院과 御史臺의 예가 보이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표 3> 朝官內侍의 官署別 分布

	官署	典據		官署	官職	人物	典據
1	吏部	<표 2>	20	中書門下	錄事	金連	列傳, p.357
2	兵部	"	21	尙書都省	員外郎	任克正	集成, p.90
3	戶部	"	22	刑部	員外郎	韓皞如	列傳, p.143
4	禮部	"	23	翰林院	直院	韓楹	集成, p.156
5	工部	"	24	史館	直館	柳公權	集成, p.281
6	國子監	"	25	司宰寺	少卿	陳玄光	列傳, p.776
7	秘書省	"	26	良醞署	令	池昌洽	世家, p.285
8	閤門	"	27	中尙署	令	李唐髦	世家, p.414
9	殿中省	"	28	大官署	令	田甫龍	集成, p.326
10	衛尉寺	"	29	掌冶署	丞	尹○○	集成, p.350
11	大僕寺	"	30	都校署	令	王字之	列傳, p.72
12	禮賓省	"	31	大樂署	丞	許珙	集成, p.403
13	大府寺	"	32	內園署	令	金永夫	集成, p.218
14	小府監	"	33	供驛署	丞	金永夫	集成, p.218
15	將作監	"	34	都染署	丞	閔宗儒	集成, p.448
16	軍器監	"	35	雜織署	丞	鄭澤	集成, p.36
17	尙食局	"	36	守宮署	丞	楊元貴	世家, p.396
18	尙衣局	"	37	大倉署	令	劉碩	集成, p.146
19	內庫	"	38	掖庭局	內謁者監	李惟信	集成, p.377

- * 世家·列傳 : 高麗史 上·下(亞細亞文化社, 1990)
 集成 : 高麗墓誌銘集成(金龍善 編著, 翰林大出版部, 1993)
- * 사례가 중복되는 官署의 경우 대표적인 官職과 人物의 예만을 적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中樞院은 從2品の 7樞職과 正3品の 承宣 및 正7品の 堂後官으로 구성된 관부였다.⁴²⁾ 이 중 宰樞인 7樞職과 承宣이 朝官內侍職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그대로인데, 正7品の 堂後官 또한 그러했는가는 의문이다. 소속 관부는 다르지만 그 위상이나 기능 및 성격 등이 비슷했던

42) 中樞院의 官職 구성에 대해서는 朴龍雲, 「高麗의 中樞院 研究」, 『韓國史研究』 12(1976) 참조

中書門下省 錄事⁴³⁾의 경우 <표 3> 에서와 같이 朝官內侍가 된 예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록 확실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럴 개연성을 보여 주는 사례조차 없는 것은 아니다. 明宗 14년의 科擧에서 壯元하여 內侍에 入屬하고 將作注簿·堂後官 및 閤門祇候를 차례로 지낸 뒤 여러 淸要職을 두루 역임했던 琴儀의 경우⁴⁴⁾가 그것인 바, 여기서의 堂後官이 內侍堂後官인지는 물론 분명치 않다. 그러나 또다른 자료에서 琴儀는 明宗 17년 9월에도 여전히 內侍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⁴⁵⁾ 內侍 入屬 이후 두 번째 역임 관직인 堂後官 또한 內侍職이었을 가능성은 크다고 하겠다.

이와 달리 御史臺의 경우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례는 커녕 그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자료조차 찾기 어렵다. 따라서 언뜻 資料의 不備를 생각하기 쉬우나, 실상은 애초부터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여기서 이같은 이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바로 ‘대저 侍臣은 으레 內侍에 있을 수 없다 凡侍臣 例不居 星官’⁴⁶⁾는 점을 강조한 A-㉔의 자료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趙冲은 大司成으로 있다가 侍臣의 하나인 翰林學士⁴⁶⁾를 兼하게 되면서 內侍를 떠났는데,⁴⁷⁾ 高麗에서 侍臣의 범주에 드는 것은 이 翰林學士만이 아니었다. 御史臺의 臺官 또한 侍臣의 중요한 일원이었는 바,⁴⁸⁾ 內侍로서 臺官職을 띤 인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侍臣不居星官’의 규례에 따라 실제로 없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점은 이들 臺官과 함께 흔히 臺諫으로 통칭되던 中書門下省의 郎舍, 즉 諫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從6品 正言으로부터 正3品 散騎常侍까지의 郎舍職

43) ‘門下錄事와 中書注書 및 堂後官을 모두 1년만에 參上職으로 승진시키자는 神宗3년의 重房上奏(『高麗史』卷 75, 志 29, 選舉 3, 銓注 選法)라든가, 堂後官과 門下錄事 등이 白銀60~70斤씩을 내고 參上職에 除授되는 役官制(同上, 役官之制), 直宿 郎舍 및 承宣에 대한 供億 調達이 門下錄事와 堂後官의 공동 책무였음을 전하는 기사(『高麗史』卷 101, 列傳 14, 閔令謨 附 混) 등에서 그러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44) 金龍善 編著, 앞의 책, 181 『琴儀墓誌銘』, 359~361쪽.

45) 『高麗史節要』卷 13, 明宗 17年 9月, 13:19a(1:349).

46) 崔濟淑, 「高麗翰林院考」, 『韓國史論叢』, 4(1981) 참조

47) 이로 보아 일단 翰林院의 學士職을 兼하게 되면 內侍를 그만두는 것이 관례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最下級職인 直院의 경우는 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표 3> 에서 소개한 韓楹의 사례를 비롯하여 兼職 형태로 直翰林院을 띤 內侍의 존재가 꽤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혹 直翰林院은 侍臣의 범주에 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48) 朴龍雲, 『高麗時代 臺諫制度 研究』(一志社 1980), 93~94 쪽

을 띤 內侍의 사례를 전혀 찾기 어려운 것 또한 諫官이 侍臣이라는 점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본다. 다음에 소개하는 韓惟忠의 예는 그같은 사실을 입증해 주는 좋은 실례일 것이다.

A-⑨ 처음에 南京留守官의 掌書記로 보임되었는데 일처리가 명백하여 衙前들이 감히 속이지를 못하였다. 서울로 돌아오자 王이 명을 내려 內侍에 入屬시키고 몇 년 지나지 않아 御書校勘에 임명하였다. 戊戌年(睿宗 13, 1118)에는 宋으로 가는 使行의 宰政을 총괄하는 都管句를 맡기었고, 選國하자 右正言知制誥를 除授하였다. 조금 후 王이 公의 淸直함을 사랑하여 바른 사람으로 하여금 左右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자 다시 殿中內給事로서 內侍에 속하게 하였다.⁴⁹⁾

韓惟忠의 初期 官歷을 전하는 위 자료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睿宗이 寵臣인 그를 內侍로 복귀시키기 위해 正言에서 殿中內給事로 改授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는 곧 韓惟忠이 右正言일 때 內侍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 正言으로서는 內侍가 될 수 없다는 점까지 보여 주기 때문이다. 만일 正言도 朝官內侍가 될 수 있다면 韓惟忠의 경우 內侍로의 복귀가 주된 목적이었던 만큼 이에 除授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를 그대로 內侍에 소속시키면 될 것을 굳이 번거롭게 다른 관직으로 改授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諫官의 初職인 正言의 경우가 이리했음을 볼 때 從5品の 起居舍人에서 正3品の 散騎常侍에 이르는 上級 諫官의 경우 또한 그러했다고 보아 잘못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보면 결국 從3品 이하의 品官職 중 侍臣의 범주에 드는 御史臺의 臺官과 中書門下省의 郎舍 및 翰林院의 學士職을 제외한 거의 모든 관직이 그 대상에 포함될 정도로 朝官內侍職의 범주는 매우 광범위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실제로 한 官署 내의 모든 從3品 이하 관직에 대한 朝官內侍의 예까지 찾아지고 있어 이같은 이해를 뒷받침해 준다. 正3品の 判事 아래 從3品の 卿, 從4品の 少卿, 從6品の 丞, 從7品の 注簿로 구성된 禮賓省의 경우가 그것이다. 앞서 소개한 바 있는 柳公權의 官歷에서 內侍禮賓卿의 예를 볼 수 있다면, 內侍禮賓少卿은 明宗 元年

49) 金龍善 編著, 앞의 책, 43 「韓惟忠墓誌銘」, 87-89 쪽

의 威有⁵⁰⁾에게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毅宗 11년에 韓楹은 內侍禮賓丞으로 있었고,⁵¹⁾ 忠烈王 13년에 朴莊은 內侍禮賓注簿를 지낸 바 있다⁵²⁾

비슷한 예를 軍器監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앞서 소개한 柳公權의 官歷이 內侍軍器監과 內侍軍器注簿의 예라면, 明宗 26년의 李芬⁵³⁾은 內侍軍器少監의 구체적인 실례이다. 그런가 하면 內侍大府卿 李白全,⁵⁴⁾ 內侍大府少卿 徐淳⁵⁵⁾과 金居實,⁵⁶⁾ 그리고 內侍로서 大府注簿를 지냈음이 분명한 崔褻抗과 柳公權 등은 大府寺 또한 그와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사례들이다. 물론 두 官署 모두 內侍軍器丞이나 內侍大府丞의 실례는 찾을 수 없지만, 앞서 논의한 禮賓省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존재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본다.

그런데 이처럼 거의 모든 官署의 官職이 朝官內侍職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고 해서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동시에 그러했던 경우는 결코 없었다고 본다. 가령 각 관서별로 1명 이상의 朝官內侍가 늘 있었던 것도 아니며, 한 官署의 여러 관직을 띤 朝官內侍가 동시에 존재했던 것은 더더욱 아니다. 高麗의 官制가 대체로 정비된 文宗 때를 기준으로 文班職의 경우 60여 官署에 320職이 넘으며⁵⁷⁾ 여기에 權務職이 대거 설치된 諸司都監各色도 30개에 이른다.⁵⁸⁾ 반면 이 무렵 朝官內侍의 수는 20여 명에 불과했다 하며(B-㉔), 이후 최대 70여 명에 이른 사실까지 확인된다.⁵⁹⁾ 따라서 官職은 물론 官署別로도 해당 직함을 띤 朝官內侍가 항상 있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믿어진다.

50) 위의 책, 126 「威有一墓誌銘」, 249~251쪽. 이에 의하면 그는 明宗 卽位년에 재차 內侍에 入屬하여 兵部郎中이 되었다가, 이듬해 禮賓少卿으로 전보된 뒤 刑部侍郎과 尙書右丞을 거쳐 明宗 8~9년 경 工部尙書로 致仕했다고 한다. 그런데 列傳 기록에 의하면 致仕 직전인 明宗 6년 한 사건에 연루되어 內侍에서 削籍되었다고 하는 바(『高麗史』卷 99, 列傳 12, 威有-), 따라서 禮賓少卿은 물론 刑部侍郎과 尙書右丞 등의 관직 또한 內侍職인 것으로 판단된다.

51) 金龍善 編著, 앞의 책, 81 「朴得齡墓誌銘」, 156쪽.

52) 위의 책, 197 「李尊庇墓誌銘」, 397~398쪽.

53) 『高麗史節要』卷 13, 明宗 26年 5月, 13:42b(1:360).

54) 『三國遺事』卷 3, 塔像 4, 前後所將舍利 149쪽

55) 金龍善 編著, 앞의 책, 73 「尹誦墓誌銘」, 144쪽

56) 위의 책, 107 「金永錫墓誌銘」, 205쪽.

57) 朴龍雲, 『高麗時代 官階·官職 研究』(고려대출판부, 1997), 15~18쪽

58) 文炯萬, 「高麗 諸司都監各色 研究」(東亞大博士學位論文, 1985).

59) 金載名, 앞의 논문(2002).

다만, 閣門과 閣門祇候의 경우는 좀 예외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명의 內侍閣門祇候가 한 시기에 같이 활동한 아주 특이한 예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仁宗 4년 2월에 있는 李資謙의 亂 때 왕의 측근으로 亂을 촉발시킨 金榮과 그에 의해 살해된 金鼎芬,⁶⁰⁾ 그리고 석 달 뒤 亂의 평정과 함께 守丞으로 쫓겨난 李存⁶¹⁾ 등이 모두 內侍祇候였는 바, 이는 閣門祇候와 朝官內侍職의 관계가 매우 긴밀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최소한 1명 이상의 閣門祇候가 항상 朝官內侍였을 가능성까지 함축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定員이 보통 한두 명에 그쳤던 다른 官職과는 달리 權知祇候를 포함하여 10명이라는 점⁶²⁾도 이러한 이해에 설득력을 더해 준다. 또한 수많은 朝官內侍의 사례 중에서 閣門祇候의 예가 가장 많이 보이는 것도 이러한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본다.⁶³⁾

IV. 朝官內侍의 職銜과 職務

高麗時代 內侍의 職能은 매우 다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執奏로서 奏事를 관장했는가 하면, 각종의 倉庫를 관리하기도 하였고 크고 작은 役事를 감독하기도 하였다. 또한 戰場이나 地方에 특별 임무를 띠고 파견되기도 했으며, 外國으로 가는 使行의 一員이 되기도 하였다. 이점 선행 연구에서 이미 지적된 바 그대로이다.⁶⁴⁾ 그런데 先學들은 대부분 個別 內侍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종합하여 內侍集團 전체의 職能이 다양했다는 점만을 강조하였을 뿐,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는 內侍들의 職銜에 따른 활동상, 즉 그들이

60) 『高麗史節要』 卷 9, 仁宗 4年 2月 辛酉, 9:10a-1a(1:228-9).

61) 『高麗史節要』 卷 9, 仁宗 4年 5月, 9:22a(1:234).

62) 『高麗史』 卷 76, 志 30, 百官 1, 通禮門, 76:33ab(2:672).

63) 한편, 지금까지 논의한 文武班職 및 權務官職 외에 이른바 南班職도 한때는 朝官內侍職의 범주에 속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 주목된다. 仁宗 말 內侍西頭供奉官이 되었다가, 毅宗 초 內侍內殿崇班으로 승차한 宦者 鄭誠의 사례가 그것이다.(『高麗史』 卷 122, 列傳 35, 宦者 鄭誠 및 『高麗史節要』 卷 11, 毅宗 5年 閏 月) 그러나 이 외에 다른 예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바, 아마도 이는 이 시기에만 국한된 한시적이고 일회적인 현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64) 姜愛子, 앞의 논문(1965) 및 周藤吉之, 앞의 논문(1980).

職銜으로 띠고 있는 原所屬 官署의 업무에 관계했는가의 與否에 대해 穿鑿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러면 과연 朝官內侍는 그 職銜에 따르는 고유한 職務가 따로 있었는가. 결론부터 말해 그러했다고 생각한다. 咸有一에 관한 다음 자료가 이러한 이해에 도움을 준다. 즉,

B-① 咸有一은 恒陽 사람이다. 樞密使 王冲이 그를 천거하니, 王(仁宗)이 본래부터 그의 명성을 듣고 있던 터라 얻게 된 것을 매우 기뻐하여 內侍로 불러들이고 軍廚의 일을 담당케 하였다. 王이 일찍이 長源停에 행차하여 近臣에게 활쏘기를 시켰을 때 有一이 적중하여 金帛을 상으로 받았으나,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모두 팔아 軍廚의 什器를 구비하였다. 毅宗 때 다시 內侍로 들어가 橋路都監을 관장하였다. 일찍이 咸有一은 사람과 鬼神이 어지러이 섞여 있으면 질병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여 巫覡을 심하게 배격하였더니, 그가 都監이 되자 京城의 巫堂들을 모두 郊外로 이사시키고, 민가의 淫祀를 모두 거두어 불태워 버렸다 明宗이 즉위하자 內侍로 불러들여 곧 兵部郎中을 除授하였다. 이 때 武人들이 兵器를 들고 거리를 횡행하더니, 有一을 보기만 하면 모두 무기를 감추고 지나갔다.⁶⁵⁾

고 하는 데서 咸有一의 일련의 行蹟은 모두 그의 內侍 職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賞으로 받은 金帛을 팔아 軍廚의 什器를 구비했다는 것은 그가 실제로 內侍로서 軍廚의 일에 관여했음을 보여 주며, 일찍부터 혐오해 오던 巫堂과 淫祀를 과감하게 철폐한 것은 內侍로서 橋路都監을 관장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또한 武器를 들고 거리를 횡행하던 武人들이 그를 조심스러워 한 것도 그가 內侍兵部郎中으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兵部의 업무에 관여했음을 반증해 준다. 만일 그렇지 않고 內侍兵部郎中이란 職銜만 띠었을 뿐 兵部의 일에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면 武人政變 직후인 당시 횡행하던 武人들이 굳이 그를 두려워 할 까닭이 없다고 본다.

65) 『高麗史』 卷 99, 列傳 12, 咸有一; 99:26b-7b(3:205-6).

文宗 때 內侍로서 大倉署를 관장한 林槩와 毅宗 때 興王寺管句內侍를 지낸 朴懷俊, 高宗 말경 內侍에 入屬하여 門下錄事에 보임된 金連 등도 같은 사실을 말해 준다. 林槩의 경우 大倉 곁에 살면서 거액의 倉穀을 盜竊한 韓順을 적발함으로써⁶⁶⁾ 실제로 그가 大倉의 관리에 관계했음을 보여 주며, 朴懷俊의 경우 宗室 王璋이 興王寺의 중 冲曦와 자주 왕래하며 不測한 모의를 한다고 上奏하여 그들을 처벌케 하였는 바⁶⁷⁾ 興王寺에서 일어나는 자그마한 일일까지 관여했음을 알려 준다. 한편 巨富였기 때문에 內侍門下錄事에 발탁되었다고 하는 金連⁶⁸⁾의 경우는 直宿 官員에 대한 供億 費用과 같은 門下錄事의 물자조달 업무⁶⁹⁾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를테면 內侍門下錄事 金連은 자신의 富를 바탕으로 물자를 원활하게 조달해야 하는 門下錄事 본연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해이다.

그런데 다음의 두 자료는 이와는 좀 다른 사실을 시사해 준다. 즉,

B-㉠ (明宗 8年 11月) 八關大會 때 內侍大夫少卿 鄭國儉을 보내어 宰相들의 幕次에 花酒를 하사하였는데, 시간을 조금 지체하자 參政 宋有仁이 화를 내며 받지 않다가, 王이 承宣을 보내 달래니 이에 받았다 이 일로 鄭國儉은 탄핵을 받아 內侍籍에서 削籍되었다가, 후에 宋有仁에게 아부하여 다시 內侍가 되었다.⁷⁰⁾

㉡ (高宗 23年) 十一月 丙寅에 八關會를 設하고 法王寺에 行차하였다 內侍小府監 庾碩에게 명하여 晉陽府에 酒果를 하사하였다. 이튿날에도 또 그렇게 하였다.⁷¹⁾

고 하는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같은 직무를 항상 특정 職銜의 內侍가 수행했던 것만은 아니다. 財貨廩藏을 職掌으로 하면서 武臣執權期 이후로는 大府寺가 國用

66) 『高麗史』 卷 97, 列傳 10, 林槩 97:18b(3:166).

67) 『高麗史』 卷 90, 列傳 3, 宗室 1, 肅宗 齊安公, 90:26b(3:49).

68) 『高麗史』 卷 107, 列傳 20, 金連 107:10a(3:357).

69) 『高麗史』 卷 101, 列傳 14, 閔令謨 附 混, 101:2b(3:232).

70) 『高麗史節要』 卷 12, 明宗 8年 11月, 12:38b-9a(1:327-8).

71) 『高麗史』 卷 23, 世家 23, 高宗 2, 23年 11月 丙寅, 23:33a(1:473).

뿐만 아니라 供上까지 支用했음⁷²⁾을 보면 八關會 때 宰相에게 下賜한 酒果를 전달하는 일은 본래 內侍大府少卿과 같이 大府寺의 직함을 띤 內侍의 職任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직무를 高宗 23년의 八關會에서는 內侍小府監이 수행하였는 바, 이는 일견 朝官內侍에게 직함에 따르는 고유한 職務가 정해져 있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좀 성급한 결론이 아닐까 싶다. 가령, B-㉔에서 酒果의 전달을 內侍小府監이 맡은 것은 당시 內侍大府少卿과 같이 大府寺 職銜을 띤 內侍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사실, 財貨의 管理와 出納을 관장했다는 점에서 大府寺와 小府監의 직능⁷³⁾은 유사하였는 바, 內侍大府少卿이 없을 경우 그 직무를 內侍小府監이 대신 처리하는 것은 그리 이상할 게 없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B-㉔의 明宗 8년 무렵 小府監의 직함을 띤 內侍가 없었다면 역시 內侍大府少卿이 그 직무를 함께 관장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官署 出身의 內侍가 동시에 俱存하지는 않았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해가 옳다면 위의 두 자료는 오히려 朝官內侍가 직함에 따르는 고유한 직무는 물론이고, 더러는 그와 유사한 성격의 주변 업무까지 아울러 담당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예라고 하겠다.

文宗의 治績에 대한 林完의 다음과 같은 평가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았음은 물론, 나아가 바로 그점이 조관내시의 본질적 특성일 가능성까지 시사해 주고 있어 주목된다.

B-㉔ 宦官과 給事는 謹慎한 젊은이만을 택해 수십 명에 불과했어도 대궐 안을 청소하는 데 충분하였고, 內侍는 반드시 功勞와 才能 있는 자만을 가려 뽑아 불과 20여 명이었으나 맡은 바 여러 官司의 일에 각기 그 능력을 다함으로써 冗官은 줄고 일이 간편해지며 비용도 절약되어 나라가 부유해졌다.⁷⁴⁾

72) 金載名, 「高麗時代 寺·監 官司와 國家財政」, 『清溪史學』 14(1998).

73) 小府監은 太祖代의 物藏省을 개편한 것으로 ‘工技寶藏의 管掌’을 그 직능으로 하였다 『高麗史』 卷 76, 志 30, 百官 1, 小府寺, 76:40ab(2:675).

74) 『高麗史節要』 卷 10, 仁宗 12年 5月, 10:12b-13a(1:257-8).

이것은 仁宗 때 林完이 왕의 求言에 부응하여 올린 上疏의 일부인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20여 명의 內侍가 여러 官司의 일을 관장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여러 관사를 관장’한 행위(所司庶官)의 주체가 20여 명의 內侍 전체인지 아니면 個別 內侍 각각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冗官이 줄었다’는 이어지는 설명에 주목할 때 ‘所司庶官’은 개별 내시마다 여러 관사의 일을 담당한 사실을 의미한다고 본다. 즉 한 명의 內侍가 여러 관사의 일을 관장하게 되면서 남은 인력이 곧 冗官이 되었을 것이라는 이해이다. 그리고 이 때 개별 내시가 맡은 여러 관사(所司庶官)란 앞서 소개한 鄭國儉과 庾碩의 예에서와 같이 아마도 자신이 직함으로 띤 관사를 비롯하여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몇몇 官司를 포괄한다고 하겠다.

朝官內侍 집단 전체의 직무가 다양했던 것은 바로 이같은 배경에서였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朝官內侍의 범주는 매우 광범위하였다. 宰樞, 臺諫, 學士 및 기타 正3品職 정도만이 제외되었을 뿐 거의 모든 관직이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그 인적 구성과 분포가 다양한데다 개별 朝官內侍마다 각자 職銜에 따르는 고유한 직무가 있었던 만큼, 이들 집단 전체의 직무는 그야말로 국정 전반에 걸쳐 다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그러면 개별 朝官內侍와 그의 原所屬 官署의 다른 朝官들, 예컨대 內侍大府少卿과 大府卿을 비롯한 大府寺의 다른 관원들이 관장한 직무는 내용상 또는 성격상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유감스럽게도 이런 의문을 명쾌한 답을 줄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두 史料를 종합해 보면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는 얻지 않을까 한다. 즉,

B-① 內侍院이 上奏하기를 “지금부터는 進膳하는 자가 있어도 다만 酒果를 주는 정도에 그치고 布帛은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布帛은 일정한 수량이 있고 進膳하는 자는 無窮하니 한도가 있는 물건으로 무궁한 비용을 낸다는 것은 장구한 계책이 아닙니다.”고 하였다. 그러자 왕이 詔書를 내려 말하기를, “..... 布帛을 비록 허비한다 하더라도 이는 다 백성이 이익을 입는 것이니 인색하게 하지 말도록 하라.”고 하였다.⁷⁵⁾

75) 『高麗史』 卷 20, 世家 20, 明宗 2, 16年 7月 甲辰 20:21b-2a(1:412).

는 데서 물품을 下賜하는 匪頒의 명이 內侍院에 내려짐을 알 수 있고, 그 王命은 다시

B-⑩ 大將軍 金子廷과 將軍 車得珪, 祇候 尹諧를(大府寺의) 別監으로 삼고 監察史와 함께 이들 別監으로 하여금 大府寺의 歲入을 고려하여 그 支出을 줄이도록 하였다. 당시 大府寺는 內僚의 口傳과 內侍院의 傳請으로 인해 소장 물품이 모두 바닥났으므로 (大府)注簿가 私적으로 빚을 내 충당하기도 했으나 오히려 지탱하지 못하고는 머리를 깎고 중이 된 자까지 있었다. (이에) 金周鼎이 “尹諧는 예전에 內侍를 지냈으므로 傳請이 있어도 능히 出納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며, ……” 고 말하고는 왕에게 요청하여 그렇게 행하였다.⁷⁶⁾

는 기사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內侍院의 傳請이란 이름으로 해당 관서인 大府寺에 전달, 집행되었을 것이다. 가령 王命을 받아 大府寺에 전달하는 것이 內侍大府少卿의 역할이라면 전달된 왕명에 따라 실무를 처리하는 일은 大府注簿와 같은 朝官의 직무였다고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의 ‘王命 傳達’은 문자 그대로 단순히 왕명을 전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달된 왕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독촉하며 심지어 직접 나서 처리하는 역할까지를 포괄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大府寺 업무에 관한 왕의 下問에 자문하는 일 또한 內侍大府少卿의 직무였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결국 朝官內侍는 명을 내리는 國王과 이를 집행하는 朝官 사이에 개재하여 왕으로 하여금 해당 관서의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메카니즘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朝官內侍가 개별적으로 職銜과 관련 있는 소정의 직무만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자신의 內侍 職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역할을 맡은 경우 또한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高宗 때 內侍를 지낸 李白全의 행적에서 그 단적인 端緒를 찾을 수 있다. 高宗 19년 6월 江華 遷都 당시 內侍大府卿이던 李白全은 十員殿에 모셔진 佛牙函을 收拾한 일이 있으며,⁷⁷⁾ 이에 앞선 같은 해 4월에는 內侍

76) 『高麗史節要』 卷 20, 忠烈王 4年 11月, 20:15b-6a(1:522).

77) 『三國遺事』 卷 3, 塔像 4, 前後所將舍利 149 쪽

로서 西京에 파견되어 慈州副使 崔椿命의 治罪를 맡기도 하였다.⁷⁸⁾ 또한 2년 뒤인 21년 7월에는 內侍로서 王命을 받들어 南京의 假闕에다 御衣를 奉安하고 돌아온 일도 있다.⁷⁹⁾ 그런데 이들 사례에 보이는 그의 활동은 모두 앞서 소개한 鄭國儉의 경우와는 달리 內侍大府卿이란 그의 內侍 職銜과는 전혀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崔椿命의 治罪나 御衣 奉安과 같은 奉命使臣으로서의 활동은 오히려 특정 朝官內侍의 고유한 직무라기보다는 內侍라면 누구든지 때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朝官內侍 집단 전체의 공동 업무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러한 추정은 仁宗 10년 御衣를 받들고 西京에 가 法事를 행한 內侍禮部員外郎 李仲孚⁸⁰⁾라든가, 毅宗 16년 王命에 따라 伊川 등지의 도적떼를 토벌하러 나선 內侍祇候 盧永淳,⁸¹⁾ 明宗 4년 趙位寵의 叛亂軍을 달래기 위해 파견된 內侍禮部郎中 崔均⁸²⁾ 등의 사례를 통해 좀더 설득력을 얻게 된다. 이들 경우 또한 內侍 職銜과 직무의 관련성을 찾기 힘들 뿐 아니라, 나아가 유사한 성격의 직무가 때에 따라 전혀 職銜을 달리하는 內侍에 의해 수행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高宗 19년, 忠州 官奴의 반란을 위무하기 위해 中書注書 朴文秀와 前奉御 金公鼎을 임시로 內侍에 入屬시키고 安撫別監으로 삼아 파견한 조치⁸³⁾는 이러한 이해의 타당성을 더욱 높여 준다. 安撫別監과 같은 奉命使臣의 경우 職銜에 그리 구애 받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朝官內侍이기만 하면 된다는 점을 함축적으로 전해 주기 때문이다.

이로써 戰場이나 地方에 파견되는 奉命使臣이 朝官內侍 집단 전체의 共同 職務라는 점은 대략 이해될 줄로 믿는다. 그러나 奉命使臣만이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奏事를 관장하는 일과 외국으로 가는 使行, 각종 儀禮에서의 執禮 또한 그런 성격의 직무였다. 奏事의 경우 宣宗 때 任懿는 內侍神虎衛錄事로서,⁸⁴⁾ 睿宗 11년

78) 『高麗史節要』 卷 16, 高宗 19年 4月, 16:13b-4b(1:418). 두 달 뒤 內侍大府卿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이 때의 職銜 또한 그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79) 『高麗史』 卷 23, 世家 23, 高宗 2, 21年 7月 甲子, 23:28a(1:470). 이 무렵의 정확한 內侍 職銜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2년 전 內侍大府卿으로 있었고, 大府卿은 朝官內侍가 있을 수 있는 官品上의 上限인 從3品職의 하나라는 점에서 여전히 內侍大府卿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80) 『高麗史節要』 卷 10, 仁宗 10年 11月, 10:5b-6a(1:254).

81) 『高麗史節要』 卷 11, 毅宗 16年 5月, 11:31a(1:294).

82) 『高麗史節要』 卷 12, 明宗 4年 10月, 12:13b(1:315).

83) 『高麗史』 卷 23, 世家 23, 高宗 2, 19年 正月 丙申, 23:10a(1:461).

에 鄭沆은 軍器注簿로서,⁸⁵⁾ 仁宗 연간에 劉碩은 權知閤門祇候로서⁸⁶⁾ 각각 執奏의 일을 맡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執奏가 특정 내시직의 전유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正6品の 禮部員外郎과 從5品の 起居郎까지 거친 뒤 毅宗 卽位年에 재차 內侍에 入屬하여 奏事를 관장한 劉碩의 예는 그러한 사실을 좀더 분명하게 입증해 준다. 한편 武臣政變 직후 表文을 들고 金에 使臣으로 다녀온 內侍工部郎中 庾應圭⁸⁷⁾라든가, 明宗 3년 賀正使로 金을 방문한 內侍(禮部)郎中 崔均⁸⁸⁾ 그리고 같은 왕 16년 內侍軍器監의 신분으로 金에 파견된 柳公權⁸⁹⁾ 등의 사례는 外國으로 가는 使行도 같은 성격의 직무임을 보여 준다. 각종 儀禮에서의 執禮 활동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본다. 앞서 소개한 A-㉠에서 보듯이 內侍의 역할을 막연히 參上·參外로만 구별하여 기술하고 있는 바,⁹⁰⁾ 이는 곧 특정 직함의 內侍가 그러한 執禮 활동을 전담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朝官內侍는 집단 전체 뿐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그 직무가 꽤 다양하였다. 직함에 따르는 고유한 직무를 항상적으로 담당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奉命使臣, 奏事, 使行 및 執禮 활동 등의 공동 업무도 수행했던 것이다. 前者를 항상적 직무라 한다면 後者는 수시적 업무라 할 수 있겠다.

V. 맺음말

지금까지 高麗時代 朝官內侍의 실체를 관직별 범주와 직무 범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 보았는 바, 논의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정리하고 이의 歷史性에

84) 金龍善 編著, 앞의 책, 16 「任懿墓誌銘」, 43 쪽

85) 위의 책, 28 「鄭沆墓誌銘」, 61 쪽

86) 위의 책, 74 「劉碩墓誌銘」, 145~146 쪽

87) 『高麗史』 卷 99, 列傳 12, 庾應圭, 99:31b(3:208).

88) 『高麗史節要』 卷 12, 明宗 3年 11月, 12:10b(1:313). 그의 履歷에서 확인되는 郎中 벼슬은 禮部郎中이 유일하며(『高麗史』 卷 99, 列傳 12, 崔均, 이듬해 10월 內侍禮部郎中으로 趙位寵의 반란을 討伐하다 살해된 점(『高麗史節要』 卷 12, 明宗 4年 10月) 등을 감안할 때, 여기서의 그의 職銜인 ‘內侍郎中’은 구체적으로 內侍禮部郎中이었다고 본다.

89) 金龍善 編著, 앞의 책, 144 「柳公權墓誌銘」, 280~281 쪽.

90) 『高麗史』 卷 64, 志 18, 禮 6, 凶禮 附太廟儀, 64:13b-4a(2:422)에서도 그러한 일례를 볼 수 있다.

대해 鄙見을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다양한 명칭의 朝官 職銜을 띠고 派遣官 형식으로 闕內的 內侍院에서 근무하는 高麗의 朝官內侍職에는 文班職은 물론 武班職도 있었다. 하지만 武班이 朝官內侍職에 진출한 것은 武臣執權期 이후의 일로, 이로부터 元 干涉期에 이르기까지 正3品の 上將軍을 제외한 모든 武班 品官職이 朝官內侍職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었다. 또한 文班의 品外職으로 대략 9品職에 상응하던 權務職도 朝官內侍職의 중요한 대상이었는데, 해당 사례를 종합해 볼 때 時期別로나 官署別로 그 분포는 꽤 다양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朝官內侍職의 根幹을 이룬 것은 역시 文班의 品官職이었다. 그리고 이 중 從9品에서 從3品까지의 品官만이 朝官內侍가 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2品 이상의 宰樞는 물론이고 正3品職인 承宣과 六部尙書 및 殿中省을 비롯한 주요 寺·監 官署의 判事 등도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官署別로는 御史臺를 제외한 거의 모든 官署의 관직이 이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다만 中書門下省과 中樞院의 경우는 최하급의 사무직인 門下錄事나 堂後官에 국한되었다. 宰樞와 承宣은 물론, 從6品の 正言에서 正3品の 散騎常侍에 이르는 郎舍 또한 朝官內侍가 될 수 없었다. ‘侍臣不居星官’의 規例 때문이었다. 같은 이유에서 御史臺의 臺官과 直院 외의 翰林院 學士도 朝官內侍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이들 모두 侍臣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宰樞·臺諫 및 正3品官, 그리고 兼官인 翰林學士를 제외한 거의 모든 관직이 朝官內侍職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고 해서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동시에 그러했던 경우는 없었다. 각 관서별로 1명 이상의 朝官內侍가 늘 있었던 것도 아니며, 한 官署의 여러 관직을 띤 朝官內侍가 동시에 존재했던 것은 더욱 아니다. 다만 閤門祗候만은 좀 예외였다.

이러한 朝官內侍의 직무는 꽤 다양했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개별 내시마다 職銜에 따르는 고유한 직무, 즉 직함으로 띤 原所屬 官署 및 몇몇 주변 관서의 업무를 항상적으로 담당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奉命使臣·奏事·使行 및 執禮 등의 공동 업무도 수행하였다. 前者를 항상적 직무라 한다면 後者는 수시적 업무라 할 수 있는데, 보다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은 前者였다. 명을 내리는 國王과 이를 집행하는 朝官 사이에 개재하여 왕으로 하여금 해당 관서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과 성격이 朝官內侍에게 있었음을 보여 주

기 때문이다.

高麗의 朝官內侍에 관해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은 대략 이와 같이 요약되는 바, 그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사실은 이 시기 權力構造의 특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미 있는 이해를 가능케 한다. 먼저, 朝官內侍는 國王의 國政 掌握力을 한층 제고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王權을 강화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했다고 본다. 즉 奉命使臣·奏事·使行 및 執禮 등의 共同 業務도 그렇거니와 특히 朝官內侍의 고유한 직무는 國王의 의지를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관철시키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官署別 分布가 광범위했던 것 또한 이와 관련이 깊다고 하겠다. 國政 全般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門下錄事와 中樞院의 堂後官까지 그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도 주목하고 싶다. 貴族官僚 勢力의 구심체라 할 中書門下省과 中樞院의 하급 사무직을 朝官內侍로 入屬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이들 세력을 견제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高麗가 朝官內侍制를 통해 專制王權을 추구해간 것은 아니다. 거의 모든 관직을 그 대상으로 하면서도 宰樞와 주요 관서의 장관인 正3品職 그리고 臺諫 및 學士 등을 배제시킨 것은 이들을 중심으로 한 貴族勢力의 실체를 일정한 정도 인정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특히 臺諫을 제외한 것은 의미가 아주 크다. 言官으로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王權의 濫用을 견제하려는 의도의 소산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高麗의 朝官內侍制는 이를 통해 國政을 좀더 확실히 장악하려는 國王과 그런 의도를 예의 견제하려는 貴族官僚들의 이해가 적절하게 맞물리는 선에서 마련되고 운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文宗 때 20여 명이던 內侍의 數가 이후 점점 늘어났고, 그 때마다 이를 줄여야 한다는 臺諫의 上疏가 빗발친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姜愛子, 「高麗時代의 內侍에 對하여」, 梨花女大碩士學位論文, 1965.
 金光洙, 「高麗時代의 權務職」 『韓國史研究』 30, 1980, 35 ~59 쪽
 金洛珍, 「牽龍軍과 武臣亂」 『高麗武人政權研究』 1995, 10 ~53 쪽

- 金龍善 編著, 『高麗墓誌銘集成』, 춘천 翰林大出版部 1993.
- 金載名, 「高麗時代 寺·監 官司와 國家財政」 『清溪史學』 14, 1998, 49 ~90 쪽
- 金載名, 「高麗 前·中期의 財政運營과 内侍」 『歷史와 社會』 24, 2000, 95 ~125 쪽
- 金載名, 「高麗時代의 内侍」 『歷史教育』 81, 2002, 81 ~109 쪽.
- 金昌洙, 「麗代 内侍의 身分」 『東國史學』 11, 1969, 127 ~140 쪽.
- 文炯萬, 「高麗 諸司都監各色 研究」, 東亞大博士學位論文, 1985.
- 朴龍雲, 「高麗의 中樞院 研究」 『韓國史研究』 12, 1976, 91 ~141 쪽
- 朴龍雲, 『高麗時代 臺諫制度 研究』, 一志社, 1980.
- 朴龍雲, 『高麗時代 官階·官職 研究』, 고려대출판부, 1997.
- 朴漢男, 「高麗内侍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碩士學位論文, 1982.
- 朴漢男, 「高麗内侍와 門閥貴族의 形成關係」 『首善論集』 8, 1984, 139 ~161 쪽
- 朴孝信, 「高麗麗代의 内侍」 『駿台史學』 19, 1966, 23 ~47 쪽
- 邊太燮, 「高麗의 三司」 『歷史教育』 17, 1975, 39 ~65 쪽
- 周藤吉之, 「高麗初期의 内侍·茶房と明宗朝以後의 武臣政權との關係」 『高麗朝官僚制の研究』 1980, 465 ~494 쪽
- 崔濟淑, 「高麗翰林院考」 『韓國史論叢』 4, 1981, 3 ~56 쪽
- 崔震植, 「高麗前期 内侍와 王權과의 關係」 『東義史學』 4, 1988, 23 ~52 쪽

주요어

内侍, 朝官内侍, 文班 品官職 武班職 權務職